

독일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Kommunalversicherer)

원리 그헨롭 한국지점 이사
최 용 민

[편집자 註]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을 위해 7월호부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관 사례를 연재 할 예정입니다.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재해 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설립 취지를 볼 때 일찍부터 자치단체의 상호공제활동의 역사가 깊은 독일의 유사 기관인 지자체 보험사 (KommunalVersicherer)의 사례 (연혁 및 현재의 역할 등)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공제기관의 정체성(identity)과 역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독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¹⁾) 보험기관

1) 지자체라 함은 시, 군, 구, 읍 등으로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행정단위를

1) 연혁과 발전사

독일은 일찍이 연대책임과 위험공동체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해 온 나라이다. 이러한 기틀 위에 마련 된 독일 지자체보험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 원래 지자체보험사는 자력에 의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으며, 지자체, 지자체 관련 기관, 협회, 그리고 기타 공제회에 대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험보장을 약속하고 지자체 나름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보험담보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취지로 지자체보험사는 수요충족의 기본원칙만으로 운영되었으며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은 없었다.

과거 지자체 보험사의 태동을 보면, 1897년에 Westfalen 시의회에서 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반조건을 검토한 바 있었다. 동시에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공제회”를 구성하여 보험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계획은 당장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1910년에 이르러서야 빛을 발하여 Bochum시의 주도로 Bochum, Gelsenkirchen, 그리고 Herne시가 함께 소위 Westfalen주 배상책임재보험공제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후에 독일 배상책임연합회로, 지금의 Bochum시에 소재하는 독일 지자체 손해폴(Pool)로 발전하였다.

마침내 1911년 6월 20일에 배상책임공제회가 설립되었으며 Rheinisch-Westfälischer 지자체공제회, 후에 지자체를 위한 프로이센 보험공제회, 그리고 쾰른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의 지자체 보험공제회로 발전되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지자체 보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20 바이에른 화재보험공제회, 1921년부터 뮌헨시에 위치한 바이에른 보험공제회
- 1921 Württemberg 지자체 상호보험회사, 현재의 Stuttgart에 위치한 Württemberg 지자체보험
- 1923 Mannheim 위치한 Bad 지자체 보험공제회, 1924년부터 Karlsruhe에 위치함
- 1924 Berlin에 위치한 독일 대도시 배상책임폴, 현재 Bochum에 위치
- 1925 Hannover에 위치한 Hannover 지자체 배상책임공제회, 현재의 Hannover 지자체손해폴
- 1926 Schleswig-Holstein 도시 배상책임공제회, 현재 Kiel에 위치

의미한다.



한편, 지방의 운송회사를 위한 특수보험회사는 1904년부터 이미 Essen의 독일 단거리운송회사 배상책임공제회, 그리고 1911년에 Dortmund의 전차배상책임연맹은 현재의 공공 운송회사 배상책임연맹으로, 또한 1932년에 Bad Homburg의 독일 시군구 자동차손해보상공제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Rhein지방의 독립적인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Westfalen-Lippe 지역의 농업공제회는 주로 건물화재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보호연맹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모든 독일의 지자체보험사 설립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의 대표 공제회가 의욕적으로 주도하거나, 혹은 개별 지자체가 지역내 보험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2) 현재의 지자체 보험기관과 관할 구역

- Bad 지자체보험공제회(BGV, Karlsruhe)
사업영역은 과거 1972년 12월 31일 행정구역인 북부 및 남부바덴을 포함한다. 446개의 시, 13개의 군, 141개의 각종 공제회, 그리고 17개의 지자체가 투자한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가족들도 동 공제회에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 바이에른 보험공제회(BVV, München)
사업영역은 자유국가 바이에른과 Rheinhessen-Pfalz 지역이었다. 동 공제회는 주 공영 보험자로서 지자체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과 개인들도 보험고객으로 포함한다.
- 독일 대도시 배상책임폴(HADG, Bochum)
사업영역은 서부독일 지역의 Bochum, Bremen, Hamburg, Hannover, Kassel, Kiel이 회원도시임.
- Hannover 지자체 손해폴(KSA Hannover, Hannover)
사업영역은 Niedersachsen조의 지자체이며, 과거의 Lippe 지역을 포함한다. 회원은 1906개의 지자체와 40개의 단위지역, 그리고 659개의 기타 지자체 기관들이다.
- Schleswig-Holstein 지자체 손해폴(KSA Schleswig-Holstein, Kiel)
사업영역은 Schleswig-Holstein주이다. 회원의 숫자는 1,529이며, 주내의 지자

체 법인, 각종 재단, 그리고 각종 지자체 기관 및 기업들이다.

- 서부독일 도시 지자체 손해공제(KSA, Bochum)

사업영역은 33개의 자유도시와 34개의 지자체 기업이다.

- 지자체 보험공제회(GW, Köln)

사업영역은 대부분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Baden-Württemberg 지역의 Hohenzollern-Sigmaringen 지역이다. 그 외에 투표와 Hannover와 Schleswig-Holstein 지자체 손해공제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험보호를 보장하였는데, 특히 지역의 지자체손해공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보험종목도 담보하였다. 제한된 범위에서 지자체 보험공제회는 회원들과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자동차보험도 담보하였다. 공제회의 회원은 4,166 시, 군, 구이며, 278개의 관공서, 각종 공제회들, 119개 지방관청, 1개 도시공제회, 269개 저축은행, 그리고 1,414개의 기타 지자체 법인체이다.

- Württemberg 지자체보험, Stuttgart

사업영역은 과거의 Württemberg Hohenyollern이며 회원수는 624개 시,군,구 저축은행, 그리고 지자체 연구소들이다. 동 보험은 공무원들에 대한 위험보장도 제공하였으며 자회사인 Württemberg 지자체 소송보험주식회사는 지자체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송위험을 담보하였다.

지자체손해공제사업의 가장 큰 핵심업무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보험사와 같이 종합적으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자체보험사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보험수요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 역시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3) 지자체 보험사의 조직

i) 지자체 보험사의 정의

지자체보험사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시, 군, 구, 관공서, 각종 공제회, 행정기관, 특수 공제회, 그리고 지자체가 50%이상 투자(참여)한 기업들(운송회사, 주택 건설회사, 공익 사업회사), 저축은행, 지자체 대표공제회 및 특수목적 공제회, 초지역

적 지자체공제회이다. 지자체보험사는 부분적으로 지자체의 자가보험 성격이 있는 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 보험관련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자체보험사는 제국보험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상해보험자인 지자체상해보험공제회 혹은 상해보험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i) 법적 형태

위에 열거한 여러 지자체보험사들은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갖고 있다. 지자체손해공제들은 각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법인체가 아닌 단체이다. 예를 들어, Bad 지자체 보험공제회는 원래 특수목적 공제회인데, Badenwürttemberg의 지자체 공동업무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1974년 9월 16일부터 공공법인이 되었다. 바이에른 보험공제회는 1933년 12월 7일의 공영 보험회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영 종합보험회사로 규정되었다. Wüttemberg 지자체보험과 지자체보험공제회는 상호보험회사(§ § 15ff, VAG(독일보험감독법)이다. 그리고 대형 보험공제회는 보험감독법과 관계가 깊어 바이에른 보험공제회는 바이에른주 경제부의 감독을 받으며 Bad 지자체 보험공제회 (1982년 1월 1일부터)와 Wüttemberg 지자체보험은 베를린에 있는 연방 금융감독청 보험국의 감독을 받는다. 지자체손해공제는 독일 보험감독법 제1장 제3절에 의해서 금융감독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여타 민영 보험회사는 당연히 연방 감독청의 감독을 받는다.

iii) 조직

a) 총회 (Mitgliedervertretung)

바이에른 보험공제회와 같이 지자체보험사의 최고 상위조직은 총회이다. 이것은 회원들의 권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지자체 자립기구에서의 총회 성격과 비슷하다. 총회의 임무는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경영을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선임하고, 정관의 변경을 승인하고, 새로운 보험종목의 도입을 승인하며, 또한 감사와 경영층의 업무집행을 승인한다.

b) 감사기구 (Aufsichtsorgan)

감사기구는 지자체손해공제의 경영기구이다. Bad 지자체보험공제회에서는 감독심의위원회가 있으며, Wüttemberg 지자체보험은 주식회사 제111장과 연계된 독일 보험감독법 제35장에 의거하여 경영층을 감독하는 감사회를 두고 있다. 바이에른 보험공제회를 제외하고 손해공제의 경영진, 감독심의위원회, 기타 나머지 지자체보험사의

감사회는 총회에서 선임된다. 감사회는 정관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최 일선에 있다.

c) 경영진

지자체 손해공제의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은 최고경영자이다. 바이에른 보험공제회の場合 바이에른 보험회회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12개의 보험계약자의 대표가 위원으로 구성되는 주의 보험위원회가 구성된다. 기타 지자체보험사의 경영자는 이사장이다. 지자체보험공제회의 경우에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은 이사회회의원이 되고 이사회를 통하여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4) 지자체 보험과 그 특징

a) 지자체보험은 특수한 형태의 자가보험

지자체의 재정은 연방과 주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다. 정부에 적용되는 자가보험원칙은 지자체에 적용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자가보험원칙은 지자체의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나 지자체 특유의 위험들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보험사의 경우 지자체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회원(조합원)이 된다. 회원은 조직의 주체가 됨과 동시에 총회에서 정관에서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지자체는 감사선임, 운영위원회 선거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담보범위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보험은 곧 넓은 의미를 지닌 종합적인 자가보험으로서 상호연합을 통하여 위험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는 곧 보험이나 재정예산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자체 자력구제의 정신으로 지자체 자가보험의 원칙을 실현시켰다.

b) 공익성과 수요충족 원칙의 기본 개념

지자체 자가보험의 원칙이나 자율적인 지자체의 자치행정, 자기책임감, 자립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형성되는 분위기로 인하여 지자체보험사는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타 민영 보험사와 달리 공익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창출이 아닌 수요충족의 원칙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 손해풀(Pool)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배상책임, 대물, 대인), 학생상해보험을 대상으로 정산센터를 조직하여 사후부과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각각의 개별 보험종목은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오직 회계년도 내에서 보험료 지급이 된 경우에 손해정산이 이루어진



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지자체 손해공제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그 외에 소위 경영자금펀드를 제외하고 회원자산에서도 역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상호회사의 경우 보험감독법 제24조에 의해서 사후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손해폴도 비슷한 방법의 부과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호회사 형태를 갖고 있는 지자체보험사는 현재까지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미래의 추정수요에 근거로 산출된 분담금 형태의 회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회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비비(비상금)에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추가회비를 받아서 충당한다. 만약에 회비가 남을 경우에 잔여금은 회원들에게 환급회비 형태로 되돌려 준다. 지자체손해폴 시스템에 적용된 변형된 사후부과방식은 지자체손해공제에 활용될 수 있다. 상호회사 형태를 갖고 있는 지자체보험사를 위한 사전의 보험료부과방식은 근본적으로 공영 지자체보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영 지자체보험사도 남은 회비를 환급회비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2. 지자체를 위한 보험

1) 손해보험 사업영역

지자체보험사는 지자체 회원들을 대변할 의무가 있다. 보장하는 위험이 다양하고 특별한 이유로 지자체의 보험상품은 다양한 보험계약자 계층들의 보험수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보험사의 사업 운영 동기는 지자체 행정업무상의 보험수요가 우선이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보험보호가 필요한 위험들은 업무배상책임을 비롯해서, 병원, 요양소,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쓰레기하치장, 하수도, 도로상의 교통안전의무, 도로정비, 수영장의 안전, 경기장, 놀이터, 묘지, 학교, 유치원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위험보장수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저축은행의 모든 업무상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험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적손해, 물적손해와 재산손해의 보장수준을 종합할 경우에 전체 보험보장 수준은 매우 높게 설정된다. 그 외에 일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명시된 일부 면책조항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첨부된 다수의 추가 보장급부를 통하여 별다른 보완이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지자체 배상책임보험은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일반 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발전하였다.

자동차보험(자동차배상책임보험, 대물, 대인,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에 있어서도 지자체보험사는 일반적인 민영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내용을 운영하지만 여기에도 일부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지자체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서도 무한대의 대인, 대물, 재산손해가 담보된다. 그 외에 지자체 자동차보험에서는 다수의 특수차량, 소방차, 자연재해예방차량, 청소차, 쓰레기차, 병원차, 구급차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가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강화된 담보범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으로 대변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법인과 위원회 회원, 의용소방대 회원, 그리고 기타 특수한 그룹들이 포함된다. 지자체보험사는 다양한 지자체의 보험목적물로 인하여 일반 손해보험(주택보험, 화재보험, 산림화재보험, 상수도보험, 폭풍보험, 유리보험, 도난보험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계약형태를 발전시켰으며, 동일한 보험보장을 하면서 보험약관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투명성, 단순성이 적용되는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의 고층건물 건설과 지하공사에 필요한 기술보험, 건설공사보험, 그리고 지자체 공익기업, 수영장, 하수처리장들을 위한 기계 및 설비보험, 그리고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기보험은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해 준다. 지자체, 지자체 공제회, 그리고 지자체 기관을 위한 자기손해보험(예, 바이에른에서는 회계보험)은 지자체나 지자체 기관, 공무원, 그리고 명예공무원이 스스로 업무 중에 일으킨 재물 사고, 혹은 잘못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위반하여 생긴 재물손해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보상한다.

이렇듯 자기손해보험²⁾은 책임보험의 특수형태로서 3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재물손해 보상, 둘째, 공동피보험자의 보호(약관에서는 신뢰받는 사람으로 명함), 셋째, 공무원, 명예공무원, 고용인, 노동자, 인턴, 대리법인체 회원과 위원회의 보호이다. 그리고 자기손해보험은 손해의 원인과 동기를 인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손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인보증보험은 비슷한 방법으로 독일의 상호저축은행, 지로은행이 연합한 상호

2) 독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담보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

저축은행공제회, 지로은행공제회에 근무 중인 고용인들을 보호한다. 모든 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의 원생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보살핌(복지구호)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보험 내에 학생보험을 포함시켰다. 학생보험은 일종의 단체상해보험으로서 특별 조건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본 보험요율에 추가 급부를 포함시킨다. 의무 상해보험의 보상조건보다 확장된 추가급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입게 되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하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 기타 손해보험 사업영역

- 건물보험 : 화재, 상수도, 유리, 폭풍/우박
- 동산보험 : 화재, 상수도, 유리, 폭풍/우박, 도난
- 건설보험, 전기보험
- 기계보험
- 확장위험보험(확장담보)
- 기업휴지보험
- 기타 손해보험 : 음악악기보험, 예술보험, 전시보험

2) 손해보험 사업운영의 특징

지자체보험사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을 위해서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외에 지자체 내의 타 공제회,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협조의 토대 위에 지자체 관련 계약 및 손해예방차원의 정보가 공유되며 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자체보험사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 제정 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보험사 담당자들의 높은 자질과 특히 지자체가 원하는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집적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지자체 보험사의 재보험

독일의 지자체보험사는 상호 연맹의 개념을 통한 재보험폴의 도입을 통해 자가보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Württember 지자체보험은 예외). 일반 지자체 배상책임손해

폴(AKHA), 지자체보험공제와 지지체공제는 모두 Köln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자동차 자기차량 및 대물손해보험폴(AKOAG), 일반 자동차대인 및 자기신체상해손해폴(AKINFA)을 상호 연맹하였다. 이러한 일종의 재보험폴은 독일 보험감독법 제1장 제2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미의 재보험자는 아니며 단지 민법에서 정의하는 공제회 성격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재보험폴이다.

지자체보험자는 AKHA폴을 통하여 지자체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동차자기차량손해 및 대물손해는 AKOAG폴을 통하여, 그리고 자동차대인 및 자기신체상해손해는 AKINFA폴을 통해서, 사전에 약정된 자기부담금을 상회하는 학생보험(예, AKHA폴에서는 EUR 500,000 (DM 1 mio.-상응))의 보험금은 AKUFAG폴을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업무의 흐름은 특정한 사후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된다.

이러한 폴을 통하여 개별 지자체보험자의 위험인수 능력을 초과하는 고액의 보험금 지급도 가능하며, 모든 지자체보험자의 재무능력과 거의 모든 독일 지자체의 재무능력이 통합되었다. 왜 지자체보험자가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민영 보험자와 달리 회원들에게 무한대의 보장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4. 기타 관련 기관 - 독일 지자체보험사 연방공동연구회(BADK)

독일 지자체보험사는 1980년 Köln에 독일 지자체보험사 연방공동연구회를 설립하였다. 동 연구회 설립을 기회로 지자체보험사가 더욱 긴밀하고 발전된 공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자체보험사는 지역법률 및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정보교류는 매우 필요하다.

그 외에 독일 지자체보험사 연방공동연구회와 관련하여 지자체보험사들 간에 일종의 간접적인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자체보험사(현재 Bad 지자체보험공제, 지자체공제, Württemberg 지자체보험)는 공동으로 지자체 손해폴 회원들에게 간접적인 재보험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가보험의 영역과 원칙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자체 손해폴은 보험감독법상 (제1장 제3절) 직접적인 재보험담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기타 유럽의 지자체 보험기관 운영

독일과 달리 다른 EU국가들은 1개의 지자체보험사가 모든 지자체의 보험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수요에 맞게 거의 모든 보험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지자체보험사와 달리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의 지자체 보험사는 상호보험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이들 회원, 조직, 목적 등의 구조는 독일 지자체보험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경험의 교환과 상호협조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이 활동 중 다른 나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지자체보험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내에서 관련 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유럽 지자체와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IULA)위원회에서 지자체의 상호 국제교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는 EU 회원국가들의 지자체보험사간에 상호 교류가 시작되었다. ☺

